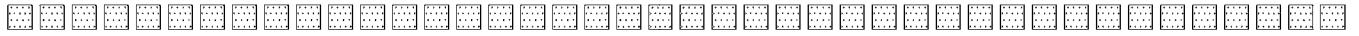


불량 적재한 엘보를 지게차로 운반하던중 낙하사고



< 재 해 개 요 >

생산한 케이블트레이 및 엘보를 지게차에 싣고 계근대로 올라가기 위해 지게차 기어를 변속하는 순간 지게차를 유도하던 재해자쪽으로 케이블트레이 4개가 낙하하여 충돌 사망한 재해임.



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1. 재해개요

- 2004년 1월 ○일 22:30분경 안산시 단원구소재 ○○개발 공장내에서 생산한 케이블트레이 및 엘보를 지게차에 싣고 계근대로 올라가기 위해 지게차 기어를 변속하는 순간 지게차를 유도하던 재해자쪽으로 케이블트레이 4개가 낙하하여 충돌 사망한 재해임.

2. 재해발생 과정

- 공장내에서 생산한 케이블 트레이 및 엘보를 지게차에 싣고 옥외에 있는 계근대로 이동하던중 야간경비원인 재해자가 지게차 옆으로 다가와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로 올라가라고 신호하여 계근대 전진방향으로 기어를 변속하고 가속기를 밟는 순간
 - 지게차가 흔들리면서 적재하고 있던 케이블트레이 4개가 낙하하여 비명소리가 나서 지게차를 정지하고 내려가 보니 재해자가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재해자가 사망한 재해임.

3. 재해발생 원인

가. 지게차 화물 적재상태 불량

-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편하중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,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하나, 화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하여 기어변속시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었음.

나.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등 안전조치 미흡

- 지게차를 사용하여 화물운반시 접촉으로 인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.

4. 동종재해 예방대책

가. 화물 적재시 안전조치 철저

-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하고 화물이 붕괴되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화물에 로우프 등으로 고정 및 화물의 과다 적재로 인한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.

나.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등 안전조치 철저

- 화물운반을 위하여 지게차를 운행하는 주요구간에는 지게차 통행로를 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만약 근로자를 출입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.

본 속보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조사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분석하고 그 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써, 동종·유사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사업장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. 좋은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동 속보는 공단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항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403-711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-4
안전기술지원국 (담당자 : 김진현, 우승일)
TEL : 032) 5100-586, 585 FAX : 032) 515-5897
Koshanet : www.kosha.net
제 공 : 한국 산업 안전 공 단